

【 2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04.

제 출 자 : 양주시장

1. 제정이유

- 체육시설이 대형화되고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관리비 부담능력 한계로 직영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불가피하고
-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필요하여 양주시 공공체육 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의 보존 관리와 직영 및 위탁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양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 함 (안 제1조)
- 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 (안 제10조)
- 라. 국가·도·시의 행사 사용료는 면제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경로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50% 감면토록 규정함 (안 제11조)
- 마. 시설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 시설사용 예약 취소시 반환금을 차등 적용토록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입장이 있고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파손 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의 등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19조)

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등)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관리책임)제1항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5년 02월 16일 ~ 2005년 03월 1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관련자료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사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학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10.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운동장시설 사용시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③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축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3월 ~ 10월	11월 ~ 02월
주 간	06:00 ~ 19:00	06:00 ~ 17:00
야 간	19:00 ~ 23:00	17:00 ~ 23: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일반, 전용, 상업사용료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③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입장수입총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 제1호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제3호의 감면은 50%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가. 사용일 1일전까지 50% 반환

나. 사용일 7일전까지 80% 반환

다. 사용일 20일전까지 전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②제1항의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허가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권) ①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입장권은 체육시설내에서 매표한다.

②모든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면제)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는 면제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단위:원)

시설명		고덕배수지체육공원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행사(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구장	주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준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시설명		테니스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행사(전용포함)		비고
		월간	1회	평일	공휴일	
테니스장		20,000	4,000	100,000	150,000	
기준	○ 테니스장은 1면이 기준이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체육경기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행사)는 전체면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시설명	생활체육돌구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행사(전용포함)	비고
	월간	1회	평일	공휴일
돌구장	10,000	2,000	30,000	45,000
기 준	○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은 1면이 기준이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체육경기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행사)는 전체면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공휴일은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시설사용자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 경우 100분의 50을 중과한다.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영화촬영	주 간	160,000
	야 간	190,000
에드벌룬등에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10,000
선전물 - 부착광고물 10미터당 진열, 선전탑 평방미터당	1년간	365,000
	5일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총판매량	판매이익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이익		